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 가. **관세 법령**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규율하고, 금지, 제한 및 통제조치를 포함한 그 밖의 세관 체제 또는 절차 하에 상품을 두는 것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을 말한다.
- 나. **요청 당국**이란 당사국에 의해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되고 이 의정서에 근거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권한 있는 행정당국을 말한다.
- 다. **피요청 당국**이란 당사국에 의해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되고 이 의정서에 근거하여 협조를 요청받는 권한 있는 행정당국을 말한다.
- 라. **개인 자료**란 확인된 또는 확인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 마. **관세 법령 위반행위**란 관세 법령의 모든 위반행위 또는 위반을 시도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 1. 양 당사국은 특히 관세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조사 및 방지를 통해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분야에서 이 의정서에 규정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 2. 이 의정서에 규정된 관세 사안에서의 지원은 이 의정서의 적용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양 당사국의 어떠한 행정당국에도 적용된다. 이는 형사 사안에서의 상호 지원을 규율하는 규칙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행사된 권한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그러한 정보의 전달이 그 당국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루지 아니한다.

3. 관세, 세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은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조

요청에 따른 지원

1.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관세 법령 위반행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주목된 또는 계획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세 법령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요청 당국에 제공한다.

2.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요청 당국에 다음을 알린다.

가. 적절한 경우, 그 상품에 적용된 통관절차를 명시하여,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제대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나. 적절한 경우, 그 상품에 적용된 통관절차를 명시하여,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대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3.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신의 법 또는 규정의 틀 내에서 다음에 대한 특별한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되어왔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다량의 상품이 조립되어 왔거나 조립될 수 있는 장소

다.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수 있는 상품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운송 수단

제4조

자발적 지원

양 당사국은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획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체 발의로 그리고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 가. 관세 법령 위반행위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행위이면서,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있는 행위
- 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 다. 관세 법령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품
-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되어왔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마.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

제5조

전달·통보

요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신의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수령인에게 요청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이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 가. 모든 문서를 전달하거나
- 나. 모든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피요청 당국에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취한다.

문서의 전달 또는 결정의 통보에 대한 요청은 서면으로 피요청 당국의 공식 언어 또는 그 당국에 수용 가능한 언어로 한다.

제6조

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의정서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그 요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

한 문서가 그 요청에 첨부된다. 사태의 긴급성으로 인해 필요한 때에는, 구두요청도 수용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요청 당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과 이유

라. 관련된 법 또는 규정과 그 밖의 법적 요소

마. 조사의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명

바. 관련 사실과 이미 수행된 조사의 요약

3. 요청은 피요청 당국의 공식 언어 또는 그 당국에 수용 가능한 언어로 제출 된다.

4. 요청이 위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 정정 또는 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 그 동안, 사전예방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제7조

요청의 수행

1. 피요청 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국의 다른 당국의 요청을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과 이용 가능한 자원의 한도 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수행한다. 이 규정은 피요청 당국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어 피요청 당국에 의해 그 요청이 전달된 그 밖의 모든 당국에도 적용된다.

2. 지원요청은 피요청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3.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국 공무원은 이 의정서의 목적상 지원요청 당국이 필요로 하는 관세 법령 위반행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된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와 그 당사국에 의해 설정된 조건하에, 제1항에 따라 피요청 당국의 사무실 또는 그 밖의 다른 관계 당국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4.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당사국 공무원은, 관련된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와 그 당사국에 의해 설정된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전달의 형태

1. 피요청 당국은 관련 문서, 인증사본, 또는 그 밖의 자료와 함께 조사결과를 지원 요청 당국에 서면으로 전달한다.
2. 이 정보는 전산화된 형태일 수 있다.
3. 원본문서는 인증사본이 불충분할 경우, 요청에 의해서만 전달된다. 이 원본은 가능한 조기에 반환된다.

제9조 지원을 제공할 의무에 대한 예외

1. 당사국이 이 의정서에 따른 지원이 다음에 해당한다는 의견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가. 이 의정서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주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 나. 특히 제10조제2항에 언급된 사례에서, 공공정책, 안보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 다.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한다.
2. 지원은 진행 중인 조사, 기소, 또는 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피요청 당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 당국과 협의한다.

3. 요청 당국이 그렇게 요청받을 경우 그 자신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당국은 자신의 지원요청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그러한 지원요청에 어떻게 응할지는 피요청 당국이 결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에, 피요청 당국의 결정과 그 이유는 지체없이 지원요청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10조 정보 교환 및 비밀유지

1. 이 의정서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되는 정보는 각 당사국에게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 성격의 것이 된다. 교환되는 정보는 공식적인 비밀 준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며, 정보를 받은 당사국의 관련 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는다.
2. 개인 자료는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이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 내에서 그 특정한 사례에 적용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식으로 그러한 자료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3. 이 의정서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개시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증거의 기록, 보고서 및 증언에서와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고소에서,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참조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그 문서에 대해 접근을 제공한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사용에 대해 통보받는다.
4. 획득된 정보는 오로지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는다. 그러한 사용은 그 당국에 의해 규정된 모든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제11조 전문가 및 증인

피요청 당국의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사안과 관련된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고 그 소송에 필요한 물품, 문서 또는 그 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출석요청은 어느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출석해야 할 것인지와 어떠한 직위와 자격으로 신문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제12조 지원비용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및 증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이 의정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서로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를 포기한다.

제13조 이행

1. 이 의정서의 이행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관세당국에 위임된다. 그들은 특히 자료 보호 분야에서의 발효 중인 규칙을 고려하여 이 의정서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조치와 방안을 결정한다. 그들은 이 의정서에 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개정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서로 협의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이행세부규칙을 추후 서로 통보한다.

제14조
다른 협정

1. 이 의정서의 규정은

가. 그 밖의 국제 협정이나 협약상의 양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수 있는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에 대해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의정서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 제6.16조 (관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관세위원회의 틀 내에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련된 추가 협정에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조건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이 의정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의 발효 시 그 효력이 중단될 것이다.